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106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9. 27. 접수 제197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대출기간 2017. 11. 2.부터 2022. 11. 1.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이던 B와 사이에 투명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또는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 제2, 3, 6조는 “B이 투명경영의무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C과 연대하여 120,000,000원 한도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1. 12. 1. B에게 “이 사건 약정서 제2조에 따른 투명경영이행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당한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B은 원고의 2021. 12. 1.자 공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B은 2021. 9. 27. 처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37,466,177원(2022. 3. 4. 기준)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 및 B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18.부터 C 및 B의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은 E조합에 물상담보로 제공1)된 공시지가 합계 68,384,4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합계 299,300,000원 상당의 채무, 원고에 대하여 합계 229,565,23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B에게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72,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별지

1)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106,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